

축산물 가공처리법 오리관련 주요부분

1.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업종별시설기준(별표11)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 도살방혈실, 작업실, 검사시험실, 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독준비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등이 있어야 한다.

(나) 계류장 도살방혈실, 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돌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정도의 경사를 주어야 한다.

(다) 계류장은 도축장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 구조로 설치하되 차광 송풍 및 급수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 수송차량 또는 가금 수송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 110Lux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살방혈실은 작업실과 차단하여 설비하되 방혈대에서 작업실의 탕지시설까지의 라인온 도체의 방혈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벽사이(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타일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실의 천정은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여 낙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아) 작업실안에는 다음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레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비하여야 한다.

2) 탕지시설 달모시설 잔모처리시설 내장적출시설 도체절단기 및 냉각시서로 구획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장적출라인별로 도체검사대를 설비하여야 한다.

3) 작업실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Lux이상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가 파열시 식육에 오염이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 설치류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작업라인에는 일정간격으로 온수(83도씨이상)가 나오는 설비를하여 가금의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도구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실의 출입구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7) 탕지시설은 콤베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기로 설비하여야 한다.

8) 탈모시설은 콤베어식 이동식탈모기 또는 자동식탈모기로 설비하여야 한다.

9) 내장적출시설안에는 콤베어식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비하여야 하고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내각시설은 냉풍냉각 수냉각 또는 빙수냉각장치로 설비하여야 한다.

11) 내장처리시설은 작업에 충분한 면적으로 설비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검사시험실은 자체검사원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체검사원실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실안에는 심부온도계 시료채취기등 시험기구류와 해부기구셋 청진기 기구보관상자 색소 및 검인보관상자(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냉장고등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가 있어야 한다.

(차)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카) 급수시설은 수도물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로서 작업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하여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을 설치하여 냄새를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레스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개폐식으로 설비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의 드나듦을 방지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파)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충 방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 도축장의 진입로 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거) 폐수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너)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을 퇴비로써 활용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더)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 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이쌍야 한다.

(러)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담장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기타 가급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닭 도축업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도축장의 위치 구조 규모 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지역내 수급상황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